

추가약정서(채무면제 상업어음할인용)

(구)외환은행-추가약정서(비소구조건부 전자어음할인용)	(구)하나은행- 추가약정서(채무면제 상업어음할인용)	제정(안)	비고																				
<p>본인은 (주)하나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체결한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이하"원약정서"라 함)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을 확약 합니다.</p> <p>제4조 (상환청구권 배제) 이 약정에 따른 할인어음거래에 대해서는 본인앞 별도의 상환 청구권을 배제 하기로 합니다.다만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을 때에 은행은 본인앞 상환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세금계산서가 허위 발행되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무효,취소 등의 사유로 원인행위가 부존재하게 되는 경우 3.제3자의 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4.허위,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본인의 귀책사유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p>제1조 (어음할인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간 당해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수반 하여 발행되고 지급장소를 은행으로 지정한 전자어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인감 목록 대조</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계</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책임자</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부점 장</td> <td style="width: 35%;"></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p>20 년 월 일자 할인어음 약정에 추가하여 채무면제 상업어음 할인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의 각 조항을 확약한다.</p> <p>제1조 채무면제 제2조에서 정한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의뢰할 경우 은행은 본인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한 환매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며 본인은 동 어음의 배서란에『무담보』또는 『이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또는『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함』등으로 기재하기로 한다.</p> <p>제2조 채무면제어음 발행인 채무면제어음의 할인은 다음의 업체가 발행한 어음에 한정한다.</p>	인감 목록 대조	계	책임자	부점 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본인확인 및 인감대조</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담당</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책임자</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관리자</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부점장</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p>20 년 월 일자 할인어음 약정에 추가하여 채무면제 상업어음할인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의 각 조항을 확약한다.</p> <p>제1조 채무면제 제2조에서 정한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의뢰할 경우 은행은 본인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에 의한 환매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며 본인은 동 어음의 배서란에『무담보』또는 『이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또는『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함』등으로 기재하기로 한다.</p> <p>제2조 채무면제어음 발행인 채무면제어음의 할인은 다음의 업체가 발행한 어음에 한정한다.</p>	본인확인 및 인감대조	담당	책임자	관리자	부점장						<p>-결재라인 수정</p> <p>- 구하나은행 추가약정서 동일하게 사용</p> <p>-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조항번호 수정 반영</p>
인감 목록 대조	계	책임자	부점 장																				
본인확인 및 인감대조	담당	책임자	관리자	부점장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 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전자어음)중 당행 YES어음 지정업체 및 당행 신용 등급 5(+)이상의 외감업체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을 할인 대상으로 합니다.

제3조 (어음할인의 제한)

다음 각호 1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 은행은 어음할인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

- 1.본인,어음발행인 또는 배서인 등의 신용이 은행에서 정한 취급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2.본인,어음발행인 또는 배서인 등에 대하여 은행이 설정한 취급한도를 초과 하는 경우
- 3.보증서 담보인 경우에 보증서 약관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 또는 면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 4.본인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의 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사유가 발생한 경우
- 5.어음발행인(배서인 포함)이 YES지정업체에서 해제 및 당행 신용등급이 5(0)등급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제2조 (어음할인 신청)

- ① 전자어음은 인터넷 등 전자방식으로 할인을 신청하기로 합니다.
- ②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해당일에 할인 취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의 은행 영업일에 할인 취급하기로 합니다.
- ③ 할인 대상 어음이 경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진 상거래

채무면제어음 발행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제3조 채무면제어음 대상의 제외

은행은 필요한 경우 제2조에서 정한 발행인을 채무면제어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채무면제 할인어음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채무면제어음 발행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제3조 채무면제어음 대상의 제외

은행은 필요한 경우 제2조에서 정한 발행인을 채무면제어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채무면제 할인어음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에 수반하여 발행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상의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의한 영수증)를 은행 앞 제출하기로 합니다.

제5조 (면책)

- ① 본인의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인터넷뱅킹등의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경우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은행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주 외환은행) 제20조에서 정한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② 본인은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은행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의 어음할인이 제한 받은 경우에 은행 앞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니다.

제6조 (효력)

본 추가약정서,원 약정서,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추가약정서가 가장 우선하고,다음으로 원약정서,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순서로 합니다.

제4조 기타 특약사항

	본인	(인)
--	----	-----

제4조 기타 특약사항

	본인	(인)
--	----	-----